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3-385호, 2013.6.28.)”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 5. 23.
국토교통부장관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 : 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건설기술자 통합에 따른 교육·훈련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건설기술진흥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기준 제목 변경
- 나. 일시에 2단계 이상 승급시 승급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함
- 다. 특급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시간 개선
- 라. 기타 자구 수정 및 서식 변경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제목 중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로 한다.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3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로 한다.

제2호 중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85조제2항 별표 3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3조제1항 별표 1“를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3항 별표 3”**으로 하고, “이수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에”**로 한다.

제2장 제목 “교육훈련의 방법 및 분할교육”을 **“교육·훈련 방법 등”**으

로 한다.

제3조 제목 “교육훈련의 방법 등”을 **“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제24조제8항 및 영 제24조제2항·제85조제2항 별표 3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란 영 제25조, 제85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하고, “교육과정(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기간 이상인 과정을 말한다)을”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한다.”**로 하고,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3)의 전문교육(이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라 90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를 **“영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른 특급기술자의 경우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를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로 하고, “무형식교육(특급기술자에 한한다)으로”를 **“무형식교육(제1항 단서에 따라 90학점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기술인력은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표 1의 교육훈련기간을”를 **“건설기술자는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4호 나목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분할교육은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 1주 이상 2

주 미만인 경우 2일 또는 3일”를 “제1항에 따른 분할교육은 교육·훈련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35시간 단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14시간 또는 21시간”으로 하고, “교육훈련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훈련의”로 하고, “일일단위의”를 “일일 7시간 단위의”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를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건설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3장 제목을 삭제한다.

제5조 제목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방법”을 “교육·훈련 분야 및 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에 의함”을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해당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훈련을”를 “해당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직무분야는 건축으로 한다)의 교육·훈련을”로 하고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수행업무별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중 “금속·전자·섬유분야 등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를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2)의 교육훈련을”를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각 목 2)의 교육·훈련을”으로 하고, “나목 1)의 교육훈련을”를 “각 목 1)의 교육·훈련을”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 학력 및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평가(교육·훈련에 따른 가점을 포함한다)에 따라 일시에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각 목 2)의 교육·훈련은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건설기술자 교육시기”를 “교육·훈련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1)의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이라 함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등을 신고하여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의 기술등급 중 어느 하나를 인정받은 날을”를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가목 1), 나목 1) 및 다목 1)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이하 “최초교육”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 1)의 “건설기술 관련 업무”라 함은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가목 2), 나목 2) 및 다목 2)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승급교육”이라 한다)은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평가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기 위한 자격·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이 충족되기 전

에 이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중 “특급기술자가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로서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3)에 의한 전문교육(이하 “감리원 계속교육”이라 한다) 또는 제3호 나목 3)에 의한 전문교육(이하 “품질관리자 계속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후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 나목 3)의 3년의 기산시점은 감리원 계속교육 또는 품질관리자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 제1호 나목 3)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제 수행한 날로 한다.”를 “영 제43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라 특급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나목 3) 또는 다목 3)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종료일 이후 가목 3)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제 수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교육이수기한을 산정한다.”로 한다.

제7조 제목 “교육연기”를 “교육·훈련의 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의”를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3호 라목에 따른 교육·훈련의 연기는 같은 표 제2호 가목 3), 나목 3) 및 다목 3)의 전문교육(이하 “계속교육”이라 함)에 한하며, 교육을 받지 못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29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를 “영 제1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에 의하여 교육훈련을”를 “제1항의 사유로 교육·훈련을”로 하고,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로 하고, “교육훈련의”를 “교육·훈련의”로 한다.

제8조 제목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영 제24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을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3호 가목 3)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 인정범위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이하 이 항에서 “감리원 등”이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동일한 분야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를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3호 가목의 1) 및 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동일한 분야의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려는 경우 동일한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해 품질관리자가 이수한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로”를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이수한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으로”로 하고, “제3호의”를 “제4호의”로 한다.

제3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특급기술자 학점인정

제9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3) 및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 의한”를 “영 제42조제3항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라 특급기술자 계속교육을 90학점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의 학점은 별표 2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의 교육훈련”을 “특급기술자의 취득학점은 별표 2의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본문 후단 “이 경우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중 “전문교육”을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를 “학점의 취득을 위하여 교육·훈련을”로 하고,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신고서에”를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각 호의 서류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해 교육훈련”을 “따라 교육·훈련”으로 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의 경력증명서[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및 보유증명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에 교육훈련 이수학점 등 필요한 사항을”를 “수탁기관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보유증명서에 해당 특급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전문교육”을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전문교육”을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4장(제11조·제12조)·제5장(제13조, 제14조)을 삭제한다.

제16조중 “2016년 6월 27일”를 “2017년 5월 22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개정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 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된 사람으로서 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어 최초교육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영 부칙 제10조제2항과 같이 최초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② 영 제4조 별표 1에 따라 처음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이전의 자

격, 학력 및 경력 등을 변경신고하여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 등급을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등급의 승급 교육은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미이수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 35시간 또는 9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시간 또는 학점만큼은 제외하며, 해당 특급기술자의 차기 계속교육은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90학점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12월31일 이전에 해당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시간에 상관없이 최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2002년1월1일부터 이 고시 시행전까지 해당교육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1]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 (제8조제1항 관련)

분야	근거 법령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하수도법」 제67조	
안전관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u>전기·전자</u>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u>광업</u>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	
<u>도시·교통·토목·환경</u>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8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5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에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비 고

1. 상기한 내용에 따른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70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 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1)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같은 표 제2호 가목 2)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호 불구하고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3.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2)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으로 한다.

[별지 2]

[별표 2]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 최고학점 (3년 기준)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수강 교육 (원격 교육 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90학점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
	기타교육과정	3. 국내외 학회 또는 <u>건설관련법령에 따라</u>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u>교육</u> 이나 <u>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u>	2	수강시간	90학점
무 형 식 교 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건	90학점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9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건	90학점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건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건	9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건	6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건	30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참여시간	40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0~30	건	9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

비 고

수강교육에서 기타교육과정 인정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한다.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u>생년월일</u>		
	<u>전자우편</u>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구 분	종류	인정 번호	개시년도	월	일	학점 가중치	이수 내역	신청 학점	증 빙 자 료
			종료년도	월	일				
수강교육									
무형식교육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교육·훈련 이수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위 표의 구분·종류·인정번호에는 **제9조제1항** 별표 2의 구분·**교육·훈련** 종류·인정사항의 해당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종료 연월일은 학점의 유효기간에 관계되므로 증빙서류 상 확인이 가능한 수강 종료일·제출일 또는 출판일 등을 기재합니다.
3. 증빙자료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만들어 첨부하여도 됩니다.
5. **대리인 신고 시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신청인) 및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u>생년월일</u>	연락처
<u>본인확인</u>	<u>방법</u>	<u>확인자</u>	<u>(서명 또는 인)</u>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

*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속회사	회사명	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아래 건설기술자의 특급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증명서**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첨부서류	발급대상자 명부 (출력물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소속업체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명"란에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와 **본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발급대상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가** 기록된 출력물 또는 이동식저장매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속회사에서 이수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일사로 신고된 경우만 가능합니다.